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9일 07시 58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생활폐기물처리업 지정의 취소	3

생활폐기물처리업 지정의 취소

2014.04.17 조회수 1261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07
담당부서	도시미화과
상위법령	폐기물관리법 제14조
조례	여수시 생활폐기물처리업 대행 규칙 제11조제1항
유형	2호 - 행정질서벌(허가취소 등)
등록사유	환경
법령공표일	기존규제
존속기한	1998-08-25
규제시행/폐지일	1998-08-25
규제내용	시장은 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행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 명령을 할 수 있다. 1. 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배할 때 2.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될 때 3.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, 대여 및 저당할 때 4.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5.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할 때 6. 시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대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01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08

Yeosu Web Contents

